〈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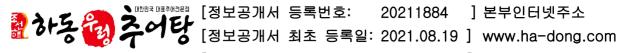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의국 대표하였던}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884] 본부인터넷주소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13] 대 표 이 메 일 주 소

issea0502@naver.com

[하동우렁추어탕]

정 보 공 개 서

㈜동해에프디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04 . 25

(주식회사 동해에프디)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3길11 미르웰한올림 205호 2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566-7949]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 1566-794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0	세 대한 설명
ΙΧ	가맹본부의 조	디영전 혀홪(식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주 소					
	하동우렁추어탕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3길11 205호(성산동)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동해에프디	2020 .07	7. 28	2020 .09. 15	조선해	156	6-7949	
	법인등록번호	110111	- 7569671	사업자등록번호 582 -		81 - 0209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하동우렁	서울마포구 모래내로3길11 205호(성산동)				
(대표자)	조선해	추어탕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41 ± 71)		T V O	조선해	1566-7949			
사용인		하동우렁	서울마포구 모래내로3길11 205호(성산동)				
(임원:이사)	김청호	추어탕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6.01)(1)			조선해	1566-7949			
계열회사	해딩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추어탕	추어탕,우렁추어탕,기타메뉴
상 호 [©]	하동우렁추어탕	
상표	を対し	상표등록증 등록 제 40-1649874호 출원번호 40-2019-0134329호 출원일 2019년 08월 29일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8,507	10,180	28,327	150,254	61,265	-10,843
2022년	49,297	28,136	21,160	318,402	-7,436	-7,166
2023년	117,395	87,216	30,179	797,888	6,825	9,01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당사의 임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정보	ΛIΞ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면 작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관련	조선해	대표이사	2020.09.15~현재	대표이사	회사 총괄		
임원	김청호	이사	2020.09.15~현재	이사	회사 내부관리 및 오픈상담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0년 12월 31일	2		1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 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조선해		2019.08.29출원	제40-2019-0134329호		2030.10.06
(서비스표권)		2020.10.07등록	제40-1649874호		2030.10.00
조선해			제40-2019-0134329호		
캐릭터 (상표등록)	TII ===	2012.08.29출원			
Z Z SH	제품, 영업표지 사용 대가	2020.10.07등록	제40-1649874호		2030.10.06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사업 현황

1. [하동우렁추어탕] 을 시작한 날: 2020년 9월 15일

2. [하동우렁추어탕]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동해에프디	하동우렁추어탕	조선해	2020.09.15.~ 현재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3길 11 205호(성산동)

3. [하동우렁추어탕]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하동우렁추어탕 	한식	추어탕류,메기매운탕, 기타식사류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 가맹점은 해당사항 없음 "

(단위: 개)

TICH	2021.12.31.		2	2022.12.3	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9	
서울								6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강원					1			1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5. 바로 전 3년간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22년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1
2023년	1	8	없음	없음	없음	8

6. [**하동우렁추어탕**]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하동우렁추어탕]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十七	영오/이름	0.0 11 12 12	등록번호	10	•	•	•
가맹본부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 가	 맹점사업자의	 의 연간 평균	 관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기역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แฉ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당 매출액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당 매출액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당 매출액	
전체	9	588,818	11,871	906,698	19,711	417,208	7,246	
서울	6	662,251	13,114	906,698	19,711	433,958	7,246	먹골점, 면목점 산정불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둔내점 산정불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정못한 사유: 본사전용포스가 아닌 타회사포스 사용으로 인하여 산정한 점포: 6점포, 산정불가 점포: 둔내점, 먹골점, 면목점

8. [하동우렁추어탕]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하동우렁추어탕]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9	21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하동우렁추어탕]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지 않고, 전액 당사자가 부담함.

구분 수단		기간	(단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712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2023년 1월 ~ 12월	1,013	1,013			
	소계						
= =	TV						
광고 	라디오						
	인터넷	2023년 1월 ~ 12월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마포 망원역지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88(서교동)	02-326-07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공정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해당 사항 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 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해당 사항 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피고	사건번호	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ō	배당사항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조선해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영업표지사용 권 대가(가맹비)	11,00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미 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		
교육비	3,300		라 반환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4,300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가맹비)	11,0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7]쪽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4,000				
필수설비(주방기 기,그릇,온수기. 컵소독기등)	당사	24,00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냉동창고,에어 콘 별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52,500 (35평기준)	1,5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계약금/중도금/ 완료시잔금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150만원 추가부담(지방공 사의 경우 10%추가)
테이블/의자외 기타	당사	5,5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간판	협력업체	7,000		계약 체결 시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간판,메뉴판,유 리선팅,액자사 진 등
닥트공사	협력업체	5,000		공사전	공사취소시	주방닥트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가 상권분석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	11,000	총액의 10%	20%	20%	5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30일	계약일+60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미고
상표사용료	당 사	월 220	매월말일	-	소멸성비용	정기납입경비 (월로열티)
광고 분담금	당 사	없음	-	_	-	기타 지역광고의 경 우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교육훈련비	당 사	없음	-	_	-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_	_	(협의사항)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혐의사항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각종 기기의교체, 보수비용	협력업체	협의사항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	교체,보수필요시 시설,기 기 등의 내구연수등을 감안하여 당시와 협의하 여 결정
POS,키오스 크 사용료	협력업체	월 11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포스,키오스크 각1대 설치시의 비용임
지연이자	당 사	없음	지 급 기 일 의 다 음 날 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	_	_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0)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위생처리	가맹점사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	매월 1회		
영업장부,	가맹점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한	매월 1회		
회계자료	영업장부, 회계자료 작성 및 유지	메르기죄	본사 및 가맹점주와	
입 ·출고,	상품 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매월 1회	상의후 변경할수있음	
매출상황 기록	입·출고 및 매출 상황 기록 유지	312 13		
매출 보고서 작성	품목별 및 일자별로 매출 보고서 작성 매월 1회			
	작성 및 가맹본사 제출	메르「외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 없음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하동우렁추어탕**]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동해에프디]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 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손해배상을 부과 할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이행완료시까지 1일당 금30,000원의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메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 는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 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 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15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하동우렁추어탕]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해당사항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우렁추어탕,추어탕류, 삼계탕 등 곤드레비빔밥,추어튀김등 메기매운탕,코다리조림 등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본사와 협의없이 판매시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일반소비자	본사로고찍힌 포장용품	판매금지	1회적발시 경고 2회적발시 30만원 벌금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 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될 것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 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우렁추어탕	12,000원~15,000원	전화통지 또는 문서	
추어탕	10,000원~12,000원	전화통지 또는 문서	
메기매운탕	30,000원~60,000원	전화통지 또는 문서	
돈까스및식사	8,000원~16,000원	전화통지 또는 문서	
코다리조림	24,000~ 55,000원	전화통지 또는 문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가목)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 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 다.]

도이하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추어탕,기타 일품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동해에프디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반경 1,000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하동우렁추어탕'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 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판매 품목	온라인 판매	비고
추어탕, 우렁추어탕, 우렁쌈장	㈜동해에프디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
2022	100%	0%	0%	1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m 0}$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2022	67%	33%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 또는 자동연장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기	볘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정기납입경비(로열티) 등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제2항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하동우렁추어탕]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 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교육비 없음)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당사의 개점 준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 하지 못하	
였을 경우 2.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의 반복적인 연체, 정기납입경비(로열티)2회 연체,	
기타 채무불이행 경우 3. 당사의 경영지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4.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제34조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10.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 체납 처분을	
발은 경우 11. 귀하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	
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시계야 됐지 사이	관련
	즉시계약 해지 사유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제35조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	
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 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1조 제1호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제41조 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 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야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반경1,000미터 내에서] 귀하가 [하동우렁추어탕]과동 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추어탕,메기매운탕,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문의:
다리조림류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가맹사업팀
관련 업종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하동우렁추어탕]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미고
08:00부터	월25일 이상 개점 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	문의
20:00(일반점포	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	본사와협의
근무시간임.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공휴일로 인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음)	는 예외로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8시 부터 오후 8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없음.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매 월	가맹사업팀	방문변동 가능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매 월	가맹사업팀	방문변동 가능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매 월	가맹사업팀	방문변동 가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하동우렁추어탕]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지 않고, 본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그 성경	부담비율		분담	비고
구군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절차	01.77
	상품광고	전액부담	없음		
광고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_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명절, Day 이벤트 행사
판촉행사	팜플렛,리플렛 카달로그 등 제작	전액부담	없음	_	(전국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가맹계약서 제37조)

-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 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이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을"은 위약 금조로 각 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 ③ "을"이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36조 제1항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3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제22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본사로고 찍힌 통일된 포장용품대신 기성제품 사용시) 시정요구 가 받아지지 않을시는 위약금조로 시정 시까지 1일 금1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손해배상](가맹계약서 제43조)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8P~9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등공사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 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 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 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	비고
ㅇ점포의시설,	ㅇ간판교체 비	ㅇ점포의확장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	ㅇ 점 포 환	
장비,인테리	용	또는이전을	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경 개 선	
어 등의 노	ㅇ인테리어 공	수반하지않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일 로 부	
후화가 객관	사 비 용 (장	는 점포환	서류 첨부) → 90일 이	터 3년	
적으로인정	비ㆍ집 기 의	경 개 선 :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이내에	
되는 경우	교체비용을	20%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가 맹 본	

	=" 01 =1 11 11		/=! =!=!!!!!!!! =!=!:::::	
ㅇ위생이나 안	제 외 한 실 내	ㅇ점포의확장	, ,	부의 책
전의결함으	건 축 공 사 에	또는이전을	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임 없 는
로 인 하 여	소 요 되 는	수반하는점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사 유 로
가맹사업의	일체의비용.	포환경개선	분할지급 가능)	계 약 이
통일성을 유	단,가맹사업	: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종료(계
지하기 어렵	의통일성과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약의 해
거나 정상적	무 관 하 게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지·영업
인영업에현	가 맹 점 사 업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양도 포
저 한 지 장 을	자 가 추 가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함)되는
주는 경우	공사를실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경우 가
	함 에 따 라		부담액을 지급	맹 본 부
	소 요 되 는		<분할지급 시 절차>	부 담 액
	비용은제외)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	중 잔여
			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기 간 에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비례하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는 부담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액은 지
			지급	급 하 지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아니하
			일 이내, 총 부담액의	거나 이
			30%, 2차 : 1차 지급일	미 지급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	한 경우
			담액의 30%, 3차 : 2차	에는 환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수 가능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 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하동우렁추어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신규 교육	- 메뉴 조리 - 테이블 세팅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필수 교육
의소 연규 교육	- 고객 응대 - 위생 교육	집단 강의	후 1개월 이내	르구 ㅛ석
 보수/정기	- 신메뉴교육 - 친절 교육 -		가맹계약	필요시 하시
	마케팅교육	집단 강의	체결일로부터	본사방문하여
교육(무료)	- 판매 촉진방안 등		6개월 이후	교육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하동우렁추어탕]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최초 오픈신규 교육	10시간	3,300 (최초교육비)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정기) 교육	2시간	(무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오픈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교육 기한후 30일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구두경고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신설)

해당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1566-7949)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ha-dong.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 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